창작영역

# 공연예술





사업명	접수일정		페이지		
		연극	-	02–3668–0025	05
공연예술 창작산실		창작뮤기	디컬	02–3668–0066	
(올해의신작)		무용ㆍ전통	등예술	02–3668–0067	65
	2023.10.4.(수) ~ 10.26.(목) 18:00 마감	음악·창작오페라		02-3668-0068	
		26.(목)	창작단체	061–900–2194 061–900–2208	
고여에스 참자주레	10.00 =		창작공간	061-900-2197	7.4
공연예술 창작주체			창작단체	061–900–2202 061–900–2192	74
		전통예술	창작공간	061-900-2198	

#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단계별 심의의 과정(서류 → 인터뷰 → 실연 심의)으로 진행하며, 실연심의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본공연 제작비 및 통합홍보, 온라인 중계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심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1. 사업목적

○ 동시대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우수한 신작 발굴

##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신작 제작 지원 단계별 심의의 과정(서류→인터뷰→실연 심의)을 진행하며, 실연심의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본공연 제작비 및 통합홍보, 온라인 중계 등을 지원

## ○ 신청대상

-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공연예술 단체
- ※ 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 신청 가능

#### ※ 유의사항

#### ① 음악분야 창·제작 유형

- 다양한 형태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한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예시) 실험 및 전자음악, 실내악, 관현악, 합창극, 음악극 등
  - \* 서양악기, 국악기, 전자악기 등 다양한 편성 및 규모 가능
  - \* 기존 곡을 인용한 재창작 가능(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에 한함)
- 전체 공연의 1/3 이상이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공연

## ②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①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② 유료로 공연화 및 발표된 작품(온라인 포함)
  - ※ 온라인 플랫폼(OTT, 유튜브, 음원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송출 및 유통된 작품 포함
- ③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 및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 ④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일정이 있는 동일 및 유사한 유료작품(안무 및 연출 요소 등)
- ⑤ 심의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 ⑥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작품 (단순 각색, 번역, 편곡,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 ※ 원형의 모티브만 사용, 소재인용을 통한 전체 재창작은 가능
- ⑦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올해의신작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공연일정이 있는 동일 및 유사한 유료작품(안무 및 연출 요소 등)
- ⑧ 국악 관현악작품
- ⑨ 정기연주회, 발표회 등 공연예술 단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 ①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내용

실연심의	본공연
서류 및 인터뷰	실연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제작비 등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심의를 통해	• 분야별 필수 회차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ul><li>− (연극) 중·대극장 8회, 소극장 12회</li></ul>
실연심의 제작 비용	- (창작뮤지컬) 소·중·대극장 20회
정액 지원	-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중·대극장 3회, 소극장 4회

#### ○ 진행 방식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대상	1,2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실연심의 대상 작품	3차 실연심의를 통해 〈올해의신작〉으로 선정된 작품(초연 원칙)
일정	2024년 3월~4월 중 개최 예정 - 선정 이후 세부 가이드라인 등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안내 ※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1~2월 중 공연 - 공연 일정은 협의를 통해 결정, 선정자(단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장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연장 (연극, 창작뮤지컬) : CJ아지트 (대학로)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 마포아트센터 선정단체 대상 발표 순서 추첨 ※ 세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및 총 무대감독과 사전협의 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공연장 - (연극, 무용):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외부 대관 희망 시 장소, 일정 협의 필수 -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외부 공연장 대관하여 진행 ※ 일정 협의 필수
평가 및 모니터링	<ul><li>심의위원회, 관객평가단을 대상으로</li><li>공개, 평가 예정</li></ul>	<ul> <li>심의위원회, 일반관객 리뷰단 모니터링</li> <li>예정</li> </ul>
기타	<ul> <li>포트폴리오, 본공연 예산집행계획 등</li> <li>추가 제출 필수</li> <li>※ 추후 오리엔테이션 개최시 세부 안내</li> </ul>	

# - 실연심의 상세안내

분야	방식	장소	일정	소요시간 (인터미션 없음)	상세 내용
연극	낭독	CJ 아지트 (대학로)	<ul> <li>(리허설) '24.3.19(화)~ 3.22(금)</li> <li>(실연심의) '24.3.26(화)~ 3.29(금)</li> </ul>	• 실연 60분 • 인터뷰 15분	당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당독공연 시 20분 내외 장면구성(배우의 이동과 동선)이 포함되어야 함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 뮤지컬	낭독	CJ 아지트 (대학로)	<ul> <li>(리허설)</li></ul>	• 실연 80분 • 인터뷰 15분	당독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무대조건으로 진행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5인조 이내 라이브 반주(지휘자 1인 별도참여 가능)     MR 사용 불가, 전자 드럼 및 키보드 기본제공및 위치 고정     무대 내 이동 및 움직임 불가, 배우 등퇴장만가능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무용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리허설) '24.4.6(토)~ 4.9(화)	• 실연 20분	•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분야	방식	장소	일정	소요시간 (인터미션 없음)	상세 내용
무용	실연	마포 아트 센터	• (실연심의) '24.4.11(목)~ 4.13(토)	• 인터뷰 15분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음악	실연	마포 아트 센터	<ul> <li>(리허설)</li></ul>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창작곡 5분 이상 3-4곡, 20분 1곡 등 자유롭게 구성, 대편성일 경우, 소규모 편성으로 편곡하여 연주 가능(편곡 악보 제출)     대도구 사용 불가, 소도구만 허용
창작 오페라	실연	마포 아트 센터	<ul> <li>(리허설)</li></ul>	• 실연 30분 • 인터뷰 15분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의상) 일상복 수준으로 허용     (분장) 기본 메이크업만 허용     (오케스트라 연주단체) 20인조 규모**로 예술위가 별도 지원 예정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 (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2024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오페라분야 선정단체는 2023년도 대본공모(오페라)지원 사업 선정 단체(3개 단체)와 실연심의 경합
전통 예술	실연	마포 아트 센터	<ul> <li>(리허설)</li></ul>	• 실연 20분 • 인터뷰 15분	실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한의 공통 무대조건으로 진행      무대, 조명, 음향 등) 별도 설치 불가      실연심의 장면 구성은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일부 장면 등 단체 재량으로 진행      대도구의 경우, 사전협의 필요 (별도의 무대세트 제작 및 반입 불가)

※ 실연심의 세부 추진사항(일정, 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 창작오페라 분야 오케스트라 구성(안)

- 1st 바이올린 2명, 2nd 바이올린 2명, 비올라 2명, 첼로 1명, 콘트라베이스 1명
- 플루트 1명, 오보에 1명, 클라리넷 1명, 베이스 클라리넷 1명, 바순 1명
- 호른 1명, 트럼펫 1명, 트롬본 1명, 팀파니 1명, 타악기(1) 1명, 타악기(2) 1명
- \* 지휘자는 실연심의 참여단체에서 별도 섭외하여 참여
- \*\* 제공 악기 이외에 추가되는 악기 및 연주자는 최대 5개로 실연심의 참여단체에서 별도 섭외 및 추가 할 수 있음

## ○ 지원규모

구분	실연심의	본공연
연극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2억2천만원
창작뮤지컬	정액 3천만원	최대 2억5천만원
무용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음악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창작오페라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2억5천만원
전통예술	정액 2천5백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	자부담 없음	자부담 10% 이상

<sup>※</sup> 지원심의를 통해 분야별 사업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예산편성 항목

세목	실연심의	본공연	비고
OLING	• 사례비	• 사례비	① 참여예술가 사례비 필수 편성 ②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있는 경우 단체 대표 사례비 편성 가능 ※ 단, 선정이후, 총사업비 내 편성비율 대비 증액 불가
일반수용비	• 실연심의 제작비	• 공연 제작비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참조, 편성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 영유아 돌봄비	• 영유아 돌봄비	
		• 홍보비	
	• 연습실 대관비	• 연습실, 극장 대관비	
임차료	• 악기 임차비	• 악기 임차비	
급시표		• 조명, 무대 관련 임차비	
		• 장비 물품 임차비	
7707 0 +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관련 우편요금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여비	교통·숙박에 한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sup>※</sup>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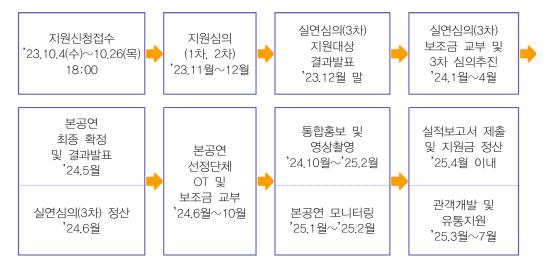
○ 2024년 사업예산 : 6,280백만원

<sup>※</sup>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sup>※</sup> 보조사업 단체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

<sup>※</sup>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및 2차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7177.11	[창작의도 및 소재] •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가? • 작품의 소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 창작의도가 작품 구성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 연출 또는 안무, 무대구성의 예술적 수준은 우수한가?
예산 및 일정계획의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타당성 (10%)	[일정계획]  • 전체적인(실연심의, 본공연 등)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실행역량의 우수성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탭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30%)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ul><li>우수 창작 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li><li>향후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li></ul>

# ○ 심의방법 : 3차 실연심의

# - 지원심의 기준

시트리의 기正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40%)	<ul> <li>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li> <li>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li> <li>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동시대성을 담보한 미학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li> </ul>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예산] • 본 공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가 적절한가?
(10%)	[일정계획] •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참여인력]  • 창작자, 출연자, 스탭 등의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었고 우수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 신청자(단체)는 사업수행 능력을 적절히 보여주는가?  • 실연은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내용에 부합하는가?
	[관객개발] •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객모집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ul><li>우수 창작 공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li><li>향후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li></ul>
관객평가 (20%)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구분	분(분0	j 별 상이)		
제출자료	연극	무용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음악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지원 신청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HWP 형식
② 예산집행계획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Excel 형식 ※ <u>지정양식 내 실연심의/ 본공연 2개 시트</u> 필수 작성
③ 핵심 창작진 사업참여 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지정양식 사용  ※ <u>서명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행정 결격</u> <u>으로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u>
④ 대본	필수	선택	선택	필수	선택	대본은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 사용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창작오페라의 경우, 작 품개요서(리브레토) 포함)     (음악) 음악극의 경우, 지원신청 작품의 전체 대본
⑤ 악보	_	_	선택	필수	필수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8곡 이상 필수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의 30분 이상 분량의 총보(보컬스코어 포함)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으로 분량으로 구성(* 실험·전자음악의 경우, 악보가 아닌 기술설명서 필수)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⑥ 음원	_	_	선택	필수	필수	(창작뮤지컬) 주요 넘버를 포함, 4곡 이상 필수     드라마, 음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 녹음(육성) 포함     (창작오페라) 지원신청 작품 30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음악) 작품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대규모 관현악) 지원신청 작품 1곡

	구분(분야별 상이)			별 상이)		
제출자료	연극	무용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음악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소규모 실내악, 합창곡, 실험·전자음악 등) 지원신청 작품 15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 - (음악극 등) 지원신청 작품의 주요 넘버 3곡
⑦ 저작권 관련 서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ul> <li>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li> <li>지원신청서 하단에 저작권 관련 이용 동 의 증빙서 첨부</li> </ul>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정산과 관련하여 반환 및 반납 대상 보조금을 반납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심의 감점〉

-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결격 처리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 시 결격 제외)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정산 기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지원심의 시 감점 적용

#### 4. 문의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연극 분야 : 02-3668-0025

- 창작뮤지컬 분야 : 02-3668-0066- 무용, 전통예술 분야 : 02-3668-0067- 음악, 창작오페라 분야 : 02-3668-0068

# 공연예술 창작주체

- ARTS COUNCIL RORE

한국문화예술위원화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괴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이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단체, 공간, 매개,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 핵심적인 역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충분히 지원 하겠습니다.

# 1. 사업목적

- 예술현장의 각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활동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예술 분야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 (3개년 지원)
-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동종 사업영역에서의 1회 이상 공적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
-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예술현장 각 분야별 해당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단체

공연장 운영,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단체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단체

# ○ 신청유형

유형	구분		
창작단체	공연 제작, 축제 운영, 공연 비평 등을 수행하는 단체		
창작공간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 단체		

#### ○ 자격기준

## [공통 자격기준]

- ① 5년 이상 활동 경력
  - ②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 1회 이상
  - \* 사업 수행 이력 확인을 위해 1개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함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 [공연분야 자격기준]

분야	지원자격
공연예술	<ul> <li>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 및 법인, 축제 조직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 (※ 개인 예술가, 공연대행사 및 국·공립 단체 신청 불가)</li> <li>공모에 지원 신청하는 단체의 명의로 5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 - 공연, 축제 등 행사의 활동 이력은 각각의 이력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언론 및 방송의 리뷰 기사, 티켓 판매처 판매 내역 중 하나 이상을 제출 해야 인정됨</li> <li>비평지 발간은 최근 5년간 발간한 비평지의 각 호별 실제 제작 부수, 배포 및 판매 내역을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됨</li> <li>(창작공간 유형 추가) 공연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미등록 시 행정 결격),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행정 결격). 또한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연 정보, 대관 현황 및 대관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함(홈페이지 주소가 없거나, 정보 미흡 시 지원 심의 과정에서 참고)</li> </ul>

## ○ 지원내용

- 2024 $\sim$ 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공연예술	<ul> <li>(창작단체 지원) 축제 개최, 공연 신작 제작 및 발표, 레퍼토리 공연, 공연 비평 등 공연예술 창작 활동 및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리서치, 리허설, 신진예술가 발굴 등)</li> <li>※ 지원금 밴드 규모에 따라 연간 사업 모니터링 건수,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 중 문예기금 비율, 수익금 보고 및 정산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음</li> <li>※ 축제 개최, 공연 비평 등이 없이, 공연 제작 및 발표만 하는 사업계획에서는 연 1회 레퍼토리 공연 필수</li> <li>(창작공간 지원) 공연장의 기획 공연 및 대관공연,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공연장 운영경비 일부의 지원</li> <li>※ 대관료 할인 운영(부대시설 사용료 등 포함 할인율 최소 50% 이상, 최소 대관 공연 10건, 최소 대관 단체 10단체) 또는 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 공연을 연 3회 이상 개최해야 함</li> </ul>

## ○ 2024년 총 지원예산

	• 19,602백만원
고업세스	(기존 다년간 지원사업 선정금액 7,560백만원, 2024년 신규 선정예산 12,042백만원)
공연예술	- 창작단체 14,602백만원(기존 선정금액 7,560백만원, 신규 선정예산 7,042백만원)
	- 창작공간 5,000백만원 (기존 선정금액 0원, 신규 선정예산 5,000백만원)

\* 정부 예산 변동에 대응하여 지원심의 시 일부 단체는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병행하여 선정 예정

## ○ 지원규모

구분	Band1	Band2	Band3
연간지원액	2천 이상~1억 미만	1억 이상~3억 미만	3억 이상~5억 미만
자부담 최소 비율	10%	10%	10%
선정예상건수(창작단체)	50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상건수(창작공간)	25건 내외	5건 내외	3건 내외
선정예상건수(합계)	75건 내외	10건 내외	6건 내외

<sup>\*</sup> 자부담 최소비율은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될 때 마다 5%씩 증가 예정(2024년 에 창작주체 선정 시 자부담 최소비율은 10%, 3년 후인 2027년에 연속으로 창작주체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최소비율은 15%로 상향됨)

##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조건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연간 사업계획 공개 발표·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 웹진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 사업 성과에 대해 연도별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지원예산 및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

- 선정단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안전관리, 관객 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창작공간 지원선정 단체(공연장)는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연(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포함)에 대해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할인 권종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할인율 50%, 1회 2매까지 제공). 또한, 당일 잔여석을 문화누리카드로 현장 결제 시 저렴한 단일가격으로 판매를 권장함(3만원 이상의 티켓 1만원 3만원 미만 티켓 5천원)
  - ※ 당일 잔여석에 한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필요(추후 별도 안내)

##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ul> <li>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 그리고 다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li> <li>신청단체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li> </ul>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 신청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예산 계획 (필수 편성 항목, 인건비 및 사례비 비중 등)은 적절한가?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	•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4.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인건비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 참여자 전원 문서 형태의		
운영비 영비	일반수용비	<ul> <li>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li> <li>안내·홍보물 등 제작비</li> <li>출판·인쇄비</li> <li>재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li> <li>무대 및 소품 등 제작비</li> <li>회계검사 수수료</li> <li>영유아들봄비</li> </ul>	표준계약서를 프로젝트 시행 전 체결 ※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월 평균 사례비를 의도적 으로 낮춰 미가입할 수 없음) ※ 공연 등 행사 추진 시 참여자와 관객의 안전을		
	사업추진비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 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보장할 수 있는 산재보험, 상해보험 또는 행사보험 가입 필수 ※ 창작주체 지원사업의 일반 운영경비는 창작단체 30%		
	임차료	<ul><li>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li><li>연습실 대관료</li><li>발표 장소 대관료</li></ul>	창작공간 50%까지 보조금 에서 편성 가능 ※ 창작공간 지원사업 Band 2, 3은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요원 인건비 필수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국내여비	<ul><li>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li><li>※ 실비 증빙가능 항목,</li><li>공무원 여비규정 준용</li></ul>	※ 기획사에 비용 지급 시 기획자에 대한 사례비로만 지급 가능		
	국외여비	• 항공료, 숙박비 등 실 소요 경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민간 이전	고용부담금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필수 제출 [추가] 참작단체 ( [추가]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①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한글 파일 1개, 엑셀파일 1개 등 총 2개 양식) ② 문화예술기관 지원사업 수행 관련 1개 사업의 실적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신청 시 지원금 수혜 이력 제출 불필요 ③ 신청단체의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붙임 엑셀 양식)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추가] 창작단체 유형	① 공연장 외 장소에서 1회당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한 공연 및 축제 : 2023년 또는 가장 최근 행사의 재해대처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의거)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 (개최장소: 산 또는 수면 /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는 관객 수와 상관없이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요		
	[추가] 창작공간 유형	① 최근 3년 내 공연장 안전검사 기록 및 검사 결과 지적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완료 내역 보고서 ② 2023년 기준 재해대처 계획서(※ 공연법 및 시행령 의거)		
선택 제출	[공통] 창작주체 (창작단체 및 창작공간)	① 3년간(2024~2026년) 단체의 활동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대관 확인서, 참여 확인서 등 ② 단체의 연간사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시 참고자료)		

# 6. 문의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분야	창작단체	창작공간
연극, 뮤지컬	061-900-2194 061-900-2208	061-900-2197
무용		
음악	061-900-2202 061-900-2192	061–900–2198
전통예술	001 000 2192	

## 7.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구분	일시	주요내용	줌 링크 및 아이디
1차	10월 10일(화) 14:00~17:00	1. 기본 사업 소개 2. 기초 질의 응답	링크: https://us06web.zoom.us/j/6529363351?pw
2차	10월 23일(월) 14:00~17:00	1. F.A.Q. 등 안내 2. 심화 질의 응답	d=aUJiN3BDd1h4Ym10aTFjNVo3SkFqZz09 회의 아이디 : 652 936 3351 암호 : 2220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 복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한 사업만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동일했거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요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원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가 복수로 응모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며, 중복 선정 시 택일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집행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 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 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지자체 및 지역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지원사업에 2024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연, 축제, 행사 등 주요 프로젝트가 관객 및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업, 시설 개선이나 자산의 취득이 주 목적인 사업,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 이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지원신청서 및 공고된 사업계획서와 단체 소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운영비, 참가비, 재료비, 광고료 등을 받는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임원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